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34
----------	-----

2012년 10월 1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8월 16일, 서영진 의원 발의
- 나. 회부일자 : 2012년 8월 19일
- 다. 상정일자 : 제24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년 10월 5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서영진 의원)

### 가. 제안이유

서울시의 미술작품 공모의 경우 응모한 작품들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해당 발주부서가 매 건별로 비상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심의함에 따라 심사위원 선정 및 작품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

거하여 운영 중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작품공모 발주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응모작품들에 대한 평가 및 선정을 의뢰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산하 미술작품선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함으로써 기존의 발주부서별 자체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함은 물론 심사위원 선정 및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가. 미술작품을 공모하는 발주부서(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포함)의 장은 응모작품들의 평가 및 선정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의뢰하고,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 나. 응모작품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해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산하에 미술작품선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함(안 제22조제6항 신설).
- 다. 미술작품선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2조제7항 신설).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용훈)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적격성(예술성, 환경과의 조화 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운영해 오고 있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서울

시의 작품공모에 대한 심사 기능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는 서울시를 비롯한 출연기관이 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 응모 작품들의 심사를 위하여 매 건별로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됨.
- 현재 관련법에 따른 미술작품설치는 사유 재산권 침해, 건축주와 작가간 이면계약 관행(리베이트 수수)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7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규제를 재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 서울시는 가급적 공모를 통하여 미술작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그 설치 절차와 방법 등이 적절한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세가지의 유형으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건축주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 미술작품을 설치하기 위하여 작가를 직접 선정하여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이며,

둘째는, 건축주가 작품 공모를 통하여 설치할 미술작품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이고,

셋째는, 건축주가 허가권자인 해당구청에 미술작품 설치를 위한 공모 대행을 요청하여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면제 받게 되는 경우임(※ 이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이 자체적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설치작품을 결정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언급한 유형과는 달리 서울시(서울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법인 포함)가 미술작품을 직접 공모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나 서울시는 신청사 건립에 따른 미술작품 공모를 위하여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설치작품을 결정한 바, 이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스스로 부정한 모순적인 사

례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를 비롯한 SH공사 등에서 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 자체적인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 없이 현재 운영중인 미술작품심의위원회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운영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동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제3항의 신설 조문 중 “미술작품을 공모하는 발주부서”란 용어는 그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시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그 내용은 일부 문구를 수정해서 미술작품의 설치절차를 규정한 동 조례 제16조의 제3항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또한, 동 일부개정조례안 제22조제6항과 제7항을 신설하여 미술작품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서울시를 비롯한 SH공사 등에서 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작품심사를 하도록 의무 규정을 마련하는 것인데 관련부서의 입장은?

**답변:** 동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  
원께서 동 조례를 포함한 문화예술분야의 조례를 보다 체계적으  
로 통합·정리하기 위하여 의원발의를 준비 중에 있으므로 동사  
안과 전부개정 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수정안의 요지 :**

안 제21조제3항의 신설 조문의 내용 중 “미술작품을 공모하는 발주  
부서”란 용어를 “시장”으로 수정하여, 해당 조문을 제16조제3항으로  
수정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934
----------	-----

제안연월일 : 2012년 10월 12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 수정이유

신설 조문 중 “미술작품을 공모하는 발주부서”란 용어가 그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므로 “시장”으로 수정하고, 그 내용을 미술작품의 설치절차를 규정한 제16조제3항에 추가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안 제21조제3항의 신설 조문 중 “미술작품을 공모하는 발주부서”란 용어를 “시장”으로 하여, 해당 조문을 제16조제3항으로 수정하여 추가함(안 제16조제3항)

## 3. 참고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공공시설의 건축물을 건립하거나 공원을 조성할 때 미술작품 등 공공미술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시장과 시 출자 또는 출연한 지방공기업 및 법인의 장은 공공미술 응모작품들의 평가 및 선정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안제 21조 제3항을 “삭제”한다.

안제 제22조제6항 중 “제21조제3항” 을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 수정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6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①~②(생략) ③ 시장은 공공시설의 건축물을 건립하거나 공원을 조성할 때 미술작품 등 공공미술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16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①~②(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공공시설의 건축물을 건립하거나 공원을 조성할 때 미술작품 등 공공미술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시장과 시 출자 또는 출연한 지방공기업 및 법인의 장은 공공미술 응모작품들의 평가 및 선정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17조~제20조 (생략)	제17조~제20조 (현행과 같음)	제17조~제20조 (개정안과 같음)
제21조(기능) ①~②(생략)	제21조(기능) ①~②(현행과 같음) ③ 미술작품을 공모하는 발주부서(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응모작품들의 평가 및 선정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의뢰하고,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기능) ①~②(개정안과 같음) <삭제>
제22조(구성 및 임기) ①~⑤(생략)	제22조(구성 및 임기) ①~⑤(현행과 같음) ⑥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제21조제3항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해 미술작품선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미술작품선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구성 및 임기) ①~⑤(개정안과 같음) ⑥ ..... 제16조 제3항..... ..... ⑦ (개정안과 같음)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시장은 공공시설의 건축물을 건립하거나 공원을 조성할 때 미술작품 등 공공미술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시장과 시 출자 또는 출연한 지방공기업 및 법인의 장은 공공미술 응모작품들의 평가 및 선정에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2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제16조제3항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해 미술작품선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⑦ 미술작품선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